

企画特輯解説

◎ 目 次 ◎

- I. 知的所有權의 概念
 - II. 最近의 動向
 - III. 最近의 國際動向
 - 가. 美國의 動向
 - 나. WIPO의 動向
 - 다. GATT의 動向
 - (1) 美國의 立場
 - (2) 開發途上國과 知的所有權問題
 - (3) GATT에서의 論議
- 〈이번號에 全載〉

I. 知的所有權의 概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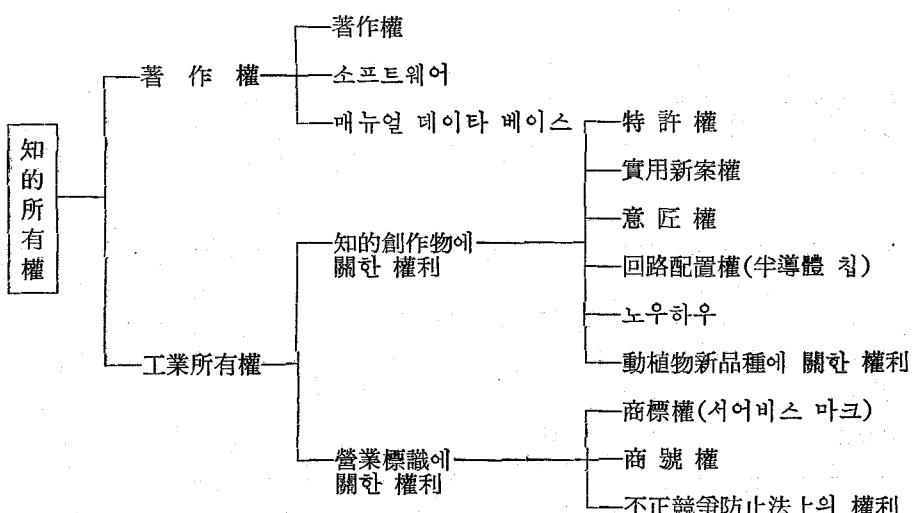
知的所有權이라 함은 人間의 知的創作物에 關한 權利와 營業上의 信用 및 產業秩序維持를 위한 標識에 關한 權利를 總稱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獨占的 排他權을 가진다.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設立條約에서는 다음과 같이

知的所有權의 美國 · WIPO ·

定義 하고있다.

「文藝·美術 및 著作物, 實演, 레코—드 및 放送, 人間의 活動의 모든 分野에서의 發明, 科學的發見, 意匠, 商標, サービス 마크 및 商號, 其他 商業上의 表示, 不正競爭에 대한 保護에 關한 權利와, 產業, 學術, 文藝 및 美術分野에 있어서의 知的活動으로부터 生成되는 모든 權利」。

이와같이 知的所有權의 範圍는 대단히 廣範해서 私的利益의 追求나 個人的인 興味等에 따른 知的活動에서 發生되는 無體財產은 모두 知的所有權을 가진다고 말 할 수 있겠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區分되고 있다. (絕對的인 區分이라고는 할 수 없음).





最近 國際的 動向

GATT의 動向 中心

鄭 完 煥

商工部 海外駐在官(前 特許廳 審
判官) 日本長期信用銀行 派遣

새로운 國際化時代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다.

II. 最近의 動向

知的所有權은 元來 國際性을 띠고 있는 것이어서 100餘年前부터 工業所有權保護에 關한 “파리條約” (1883年)과 文學 및 美術의 著作物의 保護에 關한 “베르니條約” (1886年)等에 依하여 그 權利가 國際的으로 保護되어지고 있어 知的所有權의 國際化에 대한 重要性이 認識되어져 왔기는 했었으나, 從來는 經濟自體가 그렇게 國際化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知的所有權의 國際化도 어느 程度以上은 進展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交通, 情報通信의 發展과 企業活動의 그로바리제이션화에 따라 各國經濟의 緊密度가 보다 깊어져, 世界市場은 하나의 共同市場으로 統合되어지고, 各國의 貿易依存度도 漸高되어 世界經濟의 相互依存關係가 날로 深化, 擴大 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GATT等 國際機構에서의 交涉內容도 知的所有權制度와 通信, 金融等, 서어비스 分野의 事業規制等, 새로운 分野에로 옮겨져 가고 있다. 特히 知的所有權에 대해서는 最近 “소프트 웨어”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知識과 技術의 國際移轉이 飛躍의 으로 擴散되고 있어 知的生產物의 世界市場에서의 重要性이 急速히 增大되고 있다.

따라서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國際的調整은 國際貿易의 圓滑한 發展을 促進시키는데 不可缺한 位置에 있다 하겠으므로 知的所有權은

III. 最近의 國際的 動向

가. 美國의 動向

과거 美國은 廣大한 內國市場을 믿고 國際市場에는 그다지 注目해 오질 않았으나 오늘날 모든 經濟가 國際化 됨에 따라 美國도 國際市場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各國別로 제 각기 相異한 知的所有權制度가 大端히 不便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 美國은 지극히 優秀한 技術을 保有하고 있으면서도 製造業面에 있어서는 國際競爭力を 잃고 있는 實情이 기도하다. 즉 產業의 空洞化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 따라 美國으로서는 世界各國이 어느 程度相互 調和 되어진 知的所有權制度를 갖도록 하는데 많은 關心을 갖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製品을 輸出하는 대신에 技術等의 知的所有權을 輸出 함으로써 보다 많은 Royalty 收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他國에서 生產 되어지는 不正商品 (例를 들면, 他人의 商標 模倣, Program, Video Tape, 音樂 Tape, 等의 複製와 書籍의 海賊版等)을 強力히 禁止시키는 것 만으로도 美國은相當한 利益을 얻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Hightech level의 技術에 대해서 까지 世界的으로 調和되어진 知的所有權制度가 成立되어 진다면 美國의 利益은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調和된 制度는 美國 뿐만이 아니라 技術的 先進國에서는 基本的으로同一한 立場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와 같이 現在의 美國은 知的所有權의 強化가 國益을 위하여 대단히 重要한 것이라고 判斷하여 國內的으로 強力한 對策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國內的으로는 Program을 著作權法에 포함시켜 다루고 半導體chip 保護法을 制定하는 한편 世界主要國들의 特許法과 調和를 이루기 위하여 特許法의 改正도 서두르고 있으며, 植物新品種에 대한 保護手段도 多樣화시켜 Biotechnology에 대응하는 制度도 確立해 놓고 있다. 또 裁判所는 獨占禁止法의 嚴格한 適用을 조금씩 變化시켜 가고 있으며, 從來 特許權等의 權利行使가 獨禁法에 저축 된다는 理由로 沮止 되거나 裁判所에 따라서는 特許權이 無效가 되던 例도 서서히改善 되어지고 있다.

또 한편 民間企業들도 有力한 企業 11個社(IBM, Dupont, GE, GM等)가 모여 I. P. C.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를 結成하고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를 위하여 強力한 運動을 展開 하고 있다.

이와같이 知的所有權 保護에 關한 國內的 움직임을 背景으로 國際的인 知的所有權 保護에 큰 힘을 傾注하고 있는데, 여기서 美國의 國際的戰略을 살펴 보면 다음 두가지 側面이 있음을 볼수 있다. 그 하나는 GATT를 通하여 知的所有權의 國際的確立를 圖謀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兩國間交涉을 通하여 相對國에 知的所有權의 確立를 強力히 促進시키고 있는 것이다. GATT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하고 먼저 兩國間交涉에 대해서 살펴보면, 美國이 兩國間交涉을 固執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理由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첫째는, GATT에서와 같은 多國間交涉에 있어서는 各國의 利害가 相互對立 되므로 이를 統合시키기란 지극히 어렵고 설사 統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랜 期間이 걸리게 될 것이므로 그동안에 美國은 知的所有權에 대한 莫大한 損失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兩國間交涉에 있어서는 美國의 절대

적 優位의 힘을 利用하여 自己들에게 有利한 目的達成이 容易하다는 것이다. 이는 現實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韓·美, 美·日, 美·台等에서의 交涉을 보면 一目瞭然하게 알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美國市場에의 輸出比重을 크게 가지고 있으므로 美國으로부터의 壓力에 대해서 對抗하기란 지극히 困難하게 되어있다. 實例를 들어보면 日本의 Program 保護를 위한 著作權法改正과 우리나라의 物質特許를 認定하기 위한 特許法改正等은 모두 이러한 脈絡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現時點에서는 美國의 兩國間交涉을 強力히 促進시키온 政策이 奏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또 나아가서 GATT에서의 多國間交涉에 있어서 美國의 主張이 쉽게 받아들여 질수있는 基盤을 造成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러한 一連의 事實들을 미루어 보면 美國의 知的所有權에 대한 對外的決意가 얼마나 強力한 것인가를 짐작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知的所有權의 國際化는 이러한 形態로 이룩하려는 것이 아님은 말 할 나위도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世界各國을 平等하게 다루어 나간다는 見地를 固守해야 할 것이며, 이제 GATT에서 知的所有權에 關한 諸問題를 다루고 있는 때에 美國의 힘에 依한 兩國間交涉을 그대로放置한다면 國際的合意는 더욱 遙遠해진다고 보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參考로 東京大學 法學部의 中山信弘 教授의 韓·美間 知的所有權에 關한 協定에 대한 批評을 紹介해 보겠다.

“韓·美協定에서는 美國企業만이 特別히 優待 받도록 되어있다. 具體的으로 보면 ① 美國人(法人)出願만이 改正 特許法 施行後 90日以内에 「方法特許」를 「物質特許」로 變更될 수 있음 ② 1980年 1月 1日 以後의 美國인의 物質特許에 대하여 改正特許法 施行日 以前에 韓國 및 美國 어디에도 市販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施行日 부터 10年間 美國特許權者의 同意가 없는限 韓國에서 第3者의 當該物質의 製造 및 販賣를 認定하지 않는다 ③ 改正著作權法의 施行前 10年間에 美國에서 取得한 著作權에 해당되는 著作物에 對해서는 韓國內에서의 複製를 禁

함 ④ Program에 關한 新法에 있어서도 施行前 5年間 美國人이 創作 또는 公表한 것은 韓國內에서 保護된다. 라고하는 内容이다.

이것이 文明國 友邦間의 協定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戰勝國이 敗戰國으로부터 鹿獲物을 獨點하고 있는 것과 類似하다. 이러한 일이 예사로히 存在 되어진다고 한다면 强大國은 弱少國을 위협하여 自國만이 優位에 서게 될 것이고, 2次大戰後에 겨우 이루어진 GATT體制等은 無用之物이 되고 말것이다.”

나. WIPO의 動向

WIPO는 知的所有權에 關한 UN의 專門機構로서 새로운立法의 締結과 各國立法의 調和를 圖謀하는 것을 任務中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工業所有權保護에 關한 파리條約의 改正에도 영향력을 미쳐왔다. 이에 따라 파리條約은 其間 數次改正 되어 왔으나 最近에는 南北 또는 東西의 對立 때문에 改正作業이 쉽게 進行 되질 못하고 있다. 그 대립 되고있는 主된 爭點을 보면 ① 社會主義圈의 制度인 “發明者證”을 特許와 同等한 地位로 認定 할 것인가 ② 特許發明의 不實施에 대하여 어떠한制裁를 加 할 것인가 ③ 製造方法에 關한 特許權의 効力を 어떻게 할 것인가 ④ 地理的名稱의 商標登録 및 使用의 禁止等이며, 이러한 爭點을 둘러싸고 파리同盟總會는 暗礁에 부딪치고 말았기 때문에 論議를 外交會議의 諮問會議에 넘기고 말았다.

한편 WIPO와는 別途로 GATT에서도 知的所有權 問題를 다루게 되자, 이에 자극을 받은 WIPO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不正商品에 關한 모델條項案을 檢討하는 同時에 “소프트웨어”, 半導體chip, “바이오테크노로지” 等에 대한 新條約 作成을 위하여 活潑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南北 및 東西의 對立이 根本的으로 解消 되지 않고 있어 今後 WIPO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現時點에서는 不明 하다.

한편 GATT에서 知的所有權 問題를 論議 하

고 있지만 開發途上國 그룹에서는 GATT는 知的所有權에 대한 專門機構가 아니므로 知的所有權 問題는 그 專門家 集團인 WIPO에서 다루는 것이 妥當함을 強力히 主張 하고 있어 今後 WIPO의 動向에 많은 關心을 갖게 된다.

다. GATT의 動向

GATT(關稅와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는 1948年에 成立된 協定으로서 物資의 生產 및 交換擴大를 目的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第2次 世界大戰의 原因이 되었던 불록經濟를 防止하고 物資의 自由流通을 止揚 하므로서 經濟發展을 圖謀코자 한 것이다. 이는 金融의 自由化를 圖謀하는 IMF와 함께 GATT·IMF體制로 불리워져 戰後 國際經濟의支柱役割을 해 왔다. GATT에는 現在 92個國이 加盟되어 있으며 國際經濟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只今 까지의 GATT의 主된 役割은 關稅의 調整과 輸出入數量制度의 減少等 이었으나, 1986年 “우루파이라운드” 交涉開始宣言 가운데 知的所有權, 서어비스貿易, 貿易關聯投資措置等의 새로운 分野에 대해서도 論議 하겠음 되었다. 이에 따라서 今後 知的所有權의 貿易的側面에 대한 論議가 行해지게 된 것이다. 이 知的所有權 問題는 4大國(美·EC·加·日) 貿易相會議에서 그 重要性이 認定 되어져 GATT의 새로운 “라운드”에서 다루도록 意見一致를 보았다. 그러나 各國의 利害關係意見이 반드시 一致 되지는 않고 있어 今後의 交涉에 많은 困難이 豫想 되기도 한다.

(1) 美國의 立場

前述한 바와 같이 美國은 世界的으로 知的所有權網을 펼쳐 나가는 데 重大한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GATT에서의 知的所有權關係 論議에서도 대단한 熱意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不正商品 追放이라는 素朴한 段階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이테크”分野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美國에도 弱點이 없지는 않다.

먼저 美國의 特許法을 보면 이는 世界的으로 特異한 先發明主義 制度를 취하고 있다. 世界의 거이 모든 나라가 先願主義를 採擇하고 있는데 대하여 兩制度가 根本的으로 相異하여 先進國들이一致하여 共通된 基準(Minimum requirement)을 作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美國이 自己들의 制度를 다른 先進國에 맞추어 놓고난 후 先進國이 一致하여 開發途上國들을 說得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美國은 다른 나라에서 類例를 찾아 볼수 없는 關稅法 337條를 가지고 있으며, 最近에는 이를 自國에 有利하도록 더욱 強化 시켜놓고 있다.

아무튼 GATT에서 知的所有權 保護를 論議 推進하기 위해서는 美國이 先進各國들을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美國自身이 위에서 말한 모순된 制度들을 먼저 是正 해야 할 것이다.

(2) 開發途上國과 知的所有權 問題

한편 開發途上國에도 적지 않은 問題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아직도 確固한 知的所有權制度를 갖고있지 않는 나라와 설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實効性이 없는 나라, 또는 知的所有權制度以外의 制度를 利用하고 있어 事實上 知的所有權의 機能을 잃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障害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各國에 共通되는 最低限의 規定(Minimum requirement)을 作成한必要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作業이 그리 容易하지는 않는 것이다.

도대체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知的所有權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가? 知的所有權은 “侵略을 위한 軍隊를 대신하는 세련된 武器”라고 말한다. 世界의 優秀한 技術의 大部分은 先進國의 企業에 獨占 되어져 있고 이에 대한 知的所有權도 開發途上國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獨占적 販賣權으로서 行使하고 있는 實情이어서 結局, 開發途上國으로서는 知的所有權은 自國產業을 壓迫하는 하나의 手段으로 밖에 보여지질 않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 知的所有權制度를 確立해 두지 않으면 先進國으로 부

터 優秀한 技術의 導入이 困難해 진다. 知的所有權制度가 缺如되어 있으면 國內企業이 모방만을 일삼게되어 國內技術開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短點을 招來하게 되므로 이러한 狀態에서 開途國은 언제나 窮地에 빠지게 마련인데, 現在로서는 前者의 面이 強調 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IPO에서의 論議로 結論을 얻기가 힘들게 되어있다. 先進國으로서는 知的所有權制度確立面을 強調하고 있으나 그와 並行하여 技術移轉等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必要한 것이다. 즉, 開發途上國에도 知的所有權制度를 確立시키는 것과 同時に 그 나라의 技術도 向上시켜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技術이 없는 나라에 知的所有權制度만을 얹자로 實施케 한다면 이는 摧取의 道具로 밖에 되질 않을 것이며, 또 어느 程度의 技術을 保有하고 있더라도 知的所有權制度가 確立되어 있지 않으면 그以上の 技術發展을 機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先進國에서는 知的所有權制度와 技術移轉을 同時に 實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技術移轉을 아깝게 여겨서는 아니될 것이다.

(3) GATT에서의 論議

GATT에서 論議 되고 있는 것은 먼저 不正商品의 問題이다. 이것은 商標와 디자인의 盜用 및 音樂테이프, Video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等의 無斷複製等이며, 이는 技術水準이 지극히 낮은 나라에서도 容易하게 行해 질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不正商品의 追放에 대해서는 各國으로부터 別다른 問題를 제기 하지는 않으나 Minimum requirement의 作成에는 특히 開途國을 中心으로 많은 反発이 일고 있어 어떠한 結論을 가져오게 될는지 아직 不明한 狀態이다.

또 新技術 保護問題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半導體chip,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等 新技術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新技術들은 徒來의 知的所有權에 含有 되질 않고 새로운 保護領域을構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統一된 規程을 制定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스러우나 現實의으로 各國의 利

害關係가 예리하게對立 되고 있어 GATT로서도 어떠한 結論을 내게 되겠는지 只今으로서는 不明한 狀態이다. 위와 같은 諸問題들을 안고서 GATT Uruguay Round는 1990年까지 討議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다.

從來는 財產權 이라고 하면 物權과 債權이 中心이 되어 있었으나 最近에는 知的所有權(無體財產權)이 重要한 財產으로 부각 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事件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가운데는 企業의 存廢를 左右하는 國際的 事件들도 있다.

이와 같이 知的所有權은 날로 強化一路의 傾向에 있으며 企業이 이러한 傾向에 便乘하지 못하면 뜻밖의 不利益을 당하게 되고 反面 이를 잘 利用하게 되면 큰 利益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今後에 注目해야 할 것은 知的所有權의 國際化와 美國의 傾向이라고 보겠다.

從來 知的所有權의 活用은 다만 特許管理程度에 그쳤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今後는 著作權까지 포함된 知的所有權 全體를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技術管理와 Licensing等이 重要한 位置를 點하게 될 것이므로 企業으로서도 이에 대한 陣容을 갖추는데 적극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知的所有權이 이렇듯 그 重要性을認識해 주는 現時點에서 우리나라 特許廳에 知的所有權과 關聯한 國際研修院이 設立되어 運營되고 있음은 정말 時宜摘切한 措置라고 하겠으나 좀더 知的所有權을 專門的으로 다룰 수 있는 人材養成을 위해선 각 大學에서의 知的所有權에 關한 講義 設置와 專門研究機構等의 設置 運用이 繫要하다고 보겠으며, 政府와 學界 그리고 特히 企業體에서 知的所有權에 대한 認識을 보다 깊이하여 이제부터 展開 되어지는 國際社會에서의 知的所有權 關聯 事件들에 有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 절실히 要望된다. (※)

工業所有權 지식

저자: 鄭泰連 변리사
규격: 4×6판·264면
가격: 2,300원

판매처: 韓國發明特許協會 자료판매센터

신간안내

미·일 기업의 연구개발평가

저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판: 550면
가격: 21,000원

지적소유권법(최신판)

저자: 宋永植 외 2人
국판: 959면
가격: 18,000원

경영학원론

저자: 金寅鎬
규격: 487면
가격: 7,500원

한·미 무역입문

저자: 朴勇正
규격: 국판 319면
가격: 2,500원

영문 법령집

저자: 한국발명특허협회
규격: 191면
가격: 4,000원

심사편람

저자: 한국발명특허협회
규격: 800면
가격: 11,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발명장려관
내 자료판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68-8263